

증평군 인사관리 규정

[2003. 12. 26
훈령 제 7 호]

개정 2007. 12. 21 훈령 제 40호
일부개정 2013. 8. 1 훈령 제 85호
(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)
일부개정 2021. 6. 4 훈령 제144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장 인사위원회

제3조(설치 및 구성) 증평군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 및 동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07. 12. 21>

제4조(기능) 인사위원회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8조에 따른 기능 이외에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07. 12. 21, 2021. 6. 4>

1.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
2.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
3.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
4. 삭제 <2021. 6. 4>

제5조(회의개최)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와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서면심의·의결대상 안건을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, 서면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(기밀유지) 인사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중 군수가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승진

제7조(기본원칙) ① 소속기관(임용권자 단위) 상위직 결원시 승진임용은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에 대한 법정 배수 내에 소속공무원이 없을 경우 또는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등한 부여를 위하여 군과 읍·면간에 상호교류 등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승진방법) ① 6급 이하의 승진은 현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한 법정배수 범위에서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. <개정 2021. 6. 4>

② 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승진발령 시까지 비공개로 관리한다. <개정 2021. 6. 4>

③ 승진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 내에 자격의 흠결 없이 승진 임용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·심의할 때 포함하여 심의해야 한다. <개정 2021. 6. 4>

④ 승진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승진할 수 없다. <개정 2021. 6. 4>

1. 직위해제,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2. 근무성적평정이 해당 기간 내에 “가”로 평정된 사람
3. 교육기간 중 근무태도 및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
4.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5. 그 밖에 승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사람

제4장 전보 및 보직관리

제9조(동일직위간의 전보) ① 소속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부서 또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1. 6. 4>

② 6급 이하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효율적인 보직 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직관리)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, 별표의 보직관리 기준에 의하도록 한다.

제5장 임용기준 및 비위자 관리

제11조(임용기준)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과 「지방 연구직 및 지방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에 규정된 임용요건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07. 12. 21>

제12조(빈번한 인사금지) 승진,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는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한다.

제13조(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)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하여 타직위에 전보 시에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(징계절차에 의한 처분내용은 징계난에 기록으로 제외됨)

② 제1항의 기록내용은 본인의 비위 등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 처리로 물의가 야기된 사항 등으로 경고, 훈계 또는 타직으로 전보된 내용을 별지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.

제14조(기타사항) 임용기준 및 근무기준이 이 규정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직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증평군 인사관리 규정

부칙(2007. 12. 21 훈령 제40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8. 1 훈령 제85호,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

⑬ 증평군 인사관리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 중 “담당”을 “팀장”으로, “총무담당”을 “총무팀장”으로 한다.

⑭ 및 ⑮ 생략

부칙(2021. 6. 4 훈령 제144호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3. 8. 1>

보 직 관 리 기 준

1. 일반사항

가. 보직결정의 원칙

-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에 따라 직위(부서)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(순환) 보직

나.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.

- 국·내외에서 6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교육훈련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

다. 자격증소지자 보직

-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

라. 연고지 배치

- 부모를 부양하고 주거를 같이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연고지에 배치하되 장기근무로 인한 인사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 (2~3년)으로 순환 보직

2. 필수실무요원의 보직

-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

- 군 - 팀장 ○ 읍·면 - 총무팀장

3. 복수직위의 보직

- 기술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행정, 기술 복수 직위에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가급적 보직

[별지서식]

비 위 관 계 기 록 카 드

성 명 :

생년월일 : . .

조치당시 소속 및 직위	비위내용	적발기관	조 치 상 황		기록자날인
			년 월 일	처 분	

- 비위기록내용(경고, 훈계 등 비위내용)
- 본 카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.